
강원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

- ◆ 강원도의회 제317회 임시회(3. 7. ~ 3. 17.)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.
- ◆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: <https://council.gangwon.kr/minutes/bill/search/accept.do>

제317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

◆ 총 건 : 의원발의 1건

상임 위원회	조례안명	발의자	본회의 처리결과 (2023. 3. 17.)
사회문화 위원회 (1)	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심오섭 의원	수정가결

《참고 : 조례 제정 절차 등》

- (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)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
 - * 제317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: 2023. 3. 17.(금)
- (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 공포)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
- (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)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
- (재의 요구 조례안의 확정)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
- (조례의 효력 발생)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(다만,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)
 - ※ 관련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

▣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■ 발의 : 심오섭 의원(사회문화위원회·국민의힘·강릉2)



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창작활동을 보호하고,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「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발의됐다.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강원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 ②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, 창작공간 확충·공간활성화 지원 및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③ 도지사는 예술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예술인의 생활안정, 사회보장 확대, 직업안정·고용창출,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, 법률 상담,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및 그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